##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0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신영대·조 국·진선미

이성윤 · 황명선 · 안규백

김윤덕 • 문금주 • 이광희

전재수 · 강훈식 · 부승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 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  |
| ~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
|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 4                  |  |  |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4.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  |  |
|                    | ·관리·보호·치료 등은 소     |  |  |
|                    | 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    |  |  |
|                    | 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   |  |  |
|                    | 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